

약관(일부)변경 내역

1. 투자신탁명칭

1. 신영마라톤주식투자신탁
2. 신영고배당주식투자신탁

2. 약관개요

투자신탁명칭	설정일	설정잔고(2005.11.23)	수익자수
신영마라톤주식투자신탁	2002.4.25	549 억	
신영고배당주식투자신탁	2005.10.20	2,786 억	

3. 약관변경사유

- 동 상품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증권으로 수익자는 개인 및 법인등으로서 가입에 제한이 없음.
- 재간접투자기구 또는 랩어카운트에서 이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이중의 판매회사보수의 징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약관 변경

4. 약관변경내용

해당조문	현 행	변 경(안)
제 1 조(목적등)	①생략 ②생략 ③(신설)	① 좌동 ② 좌동 <u>(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 138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수익자의 가입자격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에 투자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 8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는 3,000 억좌로 한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u>수종의 수익증권의</u> 총좌수는 <u>10 조좌로</u> 한다.
제 9 조(추가신탁)	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u>수종의 수익증권의</u>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제 10 조(신탁금의 납입)	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8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기준가격에</u>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u>수익권좌수</u> 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8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u>현금 또는 수표로</u>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u>현금 또는 수표로</u>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u>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u>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u> 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13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u>(삼 일)</u>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u>수익증권으로</u>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u>수익증권의 종류별로</u>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u>수종의 수익증권으로</u>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해당조문	현 행	변 경(안)
	<p>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설 입) 수익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p> <p>③ 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설 입)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u>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u>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p> <p>③ 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u>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u>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p>① (생 략)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설 입)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신 설) 2. (신 설)</p> <p>②~④ (생 략) ⑤ (신 설)</p>	<p>① (현행과 같음)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W 수익증권</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제15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생 략)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생 략)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u>당해</u>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u>종류 및 좌수</u>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준가격의 산 및 공시) 계	<p>①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설 입)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설 입)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설 입]"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설 입)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생 략)</p> <p>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설 입)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p> <p>④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p>	<p>①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u>]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u>]"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p> <p>④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u>전체에 대한</u> 기준가격 및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한다.</p>
제20조(수익증권의 매가격) 판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u>기준가격으로</u> (생 략)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현행과 같음)
제20의 2(수익증권의 판매기준)	(신 설)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Class A 수익증권 수익자 : 제한없음 Class W 수익증권 수익자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간접투자기구에 한함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생 략)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 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해당조문	현 행	변 경(안)
제23조(환매수수료)	① (생략)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u>수익증권</u> 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u>기준가격</u>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생략)	① (현행과 같음)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u>종류 수익증권</u> 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u>기준가격</u>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익증권의 부활환매)	① (생략) ② (생략)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u>수익증권</u> 을 교부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을 교부한다.
제27조(수익증권의 분할매)	①~③ (생략) ④ (생략)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u>기준가격</u> 을 산정하여 <u>수익증권</u> 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 을 산정하여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제28조(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② (생략) ③ (신설)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
제29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생략) ②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u>수익증권총수</u>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u>수익증권총수</u>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u>수익증권 총수</u>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u>수익증권의 총좌수</u>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u>수익증권의 총좌수</u>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⑥ (현행과 같음) ⑥ 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u>수익증권의 총좌수</u>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u>⑦ 제28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본다.</u>
제30조(수익자총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u>수익증권총수</u> 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u>수익증권 총수</u> 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u>수익증권의 총좌수</u> 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u>수익증권의 총좌수</u> 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③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본다.</u>
제33조(수익자총회의 연기)	①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수가 발행된 <u>수익증권총수</u> 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수가 발행된 <u>수익증권총수</u> 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u>수익증권총수</u> 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설)	①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④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본다.</u>

해당조문	현 행	변 경(안)
		본다.
제36조(투자대상 등) : 신영고배당주식투자 신탁만 해당되는 내용	<p>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u>(신 설)</u></p> <p>(이하생략)</p>	<p>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u>및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u></p> <p>가. 제 1 호에서 정의된 주식중 적전회계년도 결산배당금기준 배당수익률이 거래소시장 및 협회등록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이상인 주식 (이하 “고배당주”라 한다)</p> <p>(이하생략)</p>
제37조(투자한도) : 신영고배당주식투자신탁만 해당되는 내용	<p>①자산운용회사는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한다.</p> <p>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u>(신 설)</u></p> <p>(이하생략)</p>	<p>①자산운용회사는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한다.</p> <p>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u>다만,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한다.</u></p> <p>(이하생략)</p>
제38조(운용 제한)	<p>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 이 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u>투자증권등</u>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 이 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제40조(투자신탁보수)	<p>① (생 략)</p> <p>② (생 략)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삼 일)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생 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신영고배당주식투자신탁 경우></p> <p>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6.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5.4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p> <p><신영마라톤주식투자신탁의 경우></p> <p>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6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p>	<p>①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u>는 다음 각호의 <u>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u>에 <u>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u>의 연평균가액(매일의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신탁</u>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신영고배당주식투자신탁의 경우></p> <p>1. <u>Class A 수익증권</u>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6.6 나. <u>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5.4</u>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p> <p>2. <u>Class W 수익증권</u>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6.6 나. <u>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0</u>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p> <p><신영마라톤주식투자신탁의 경우></p> <p>1. <u>Class A 수익증권</u>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6 나. <u>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6</u></p>

해당조문	현 행	변 경(안)
		<p>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p> <p>2. Class W 수익증권</p> <p>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0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p>
제41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u>수익자</u>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신설)</p> <p>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신설)</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u>전체 수익자</u>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다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한다.</u></p> <p>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u>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u>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p>
제43조(이익분배)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u>(삼 입)</u>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u>당해 종류 수익증권별</u>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
제4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p>① (생 락)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p> <p>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u>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u>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생 락)</p>	<p>① (현행과 같음)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p> <p>② 이익분배금으로 <u>당해 종류 수익증권</u>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u>종류별 매수 수익증권 및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u>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p>
제48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p>①~② (생 락) ③ (신 설)</p>	<p>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u></p>

해당조문	현 행	변 경(안)
제49조(신탁약관의 변경)	<p>①자산운용회사가 이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①자산운용회사가 이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u>변경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u>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p>①~ ③ (생략) ④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u>(신설)</u></p> <p>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다만, <u>관련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에 의한다.</u></p> <p>(신설)</p>	<p>①~ ③ (현행과 같음) ④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u>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다만, <u>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u></p> <p>⑥수탁회사는 제4항의 수탁회사보고서를 판매회사에 제출하여 자산운용보고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신 설)	부 칙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2005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수익자에 대한 Class의 적용)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신탁약관 제20조의2제1호의 Class A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본다.